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19호 2014. 12. 29. (월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052호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 하동군 조례 제2053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하동군 조례 제2054호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하동군 조례 제2055호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24
○ 하동군 조례 제2056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 하동군 조례 제2057호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 하동군 조례 제2058호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47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124호	하동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52
○ 하동군 규칙 제1125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3

회 람									
----------------	--	--	--	--	--	--	--	--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2월 29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하동군 조례 제2052호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하동군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財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안전행정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따른다.
- ④ 군수는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하동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 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등 관련 실과소장 3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하 동 군 공 보

(4) 제 419 호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

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지방보조사업의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하 동 군 공 보

(6) 제 419 호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제16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으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제16조에 따른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교부방법) ① 지방보조금은 공사비의 경우 실적비로 지급하고,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게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용도의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 명확한 계산서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는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2조(정산검사)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폐지 승인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액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하 동 군 공 보

(8) 제 419 호

제23조(감독 등)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지방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지방보조사업 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의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및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 ⑥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替)할 수 있다.
-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

하 동 군 공 보

(10) 제 419 호

용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2.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는 2016년 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②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③ 「하동군 대한노인회하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중 “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④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⑤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 ⑥ 「하동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 ⑦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 ⑧ 「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 ⑨ 「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 「하동군 보조금관리 조례」 ”를 “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 ⑩ 「하동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 ⑪ 「하동군 농어업인 용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 ⑫ 「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 ⑬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 ⑭ 「하동군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하동군의회의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2월 29일

하 동 군 수 운 상 기

하동군 조례 제2053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를 “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23조에 제7항에서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⑨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 ⑩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관계법령에 의거 인가된 학습시설)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자녀학교의 초청장,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⑪ 군수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 및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각각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단,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장기재직휴가는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사용을 금지한다.
 2. 부서장은 장기재직휴가 허가 시는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휴가 사실 기록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반드시 행정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기는 제18조, 제23조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기준(제23조의2 관련)

1. 휴가일수 계산 등

- 가. 휴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 다. 휴가기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연가

-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begin{array}{rcccl}
 \text{「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 & & \text{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및} \\
 \text{제18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 & & & \text{한시 임기제공무원의 주당} \\
 \text{연가일수} & \times & & & \text{근무시간} & \times 8 \\
 & & & & \hline
 & & & & \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end{array}$$

-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공제한다.
- 다. 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3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해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3. 병가

- 가. 군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 2) 해당 공무원이 감염병에 걸려 출근 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가목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1일 평균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호나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4. 특별휴가

-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 나.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 다. 수업휴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18조(연가일수)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u>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u></p>	<p>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u>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u></p>
<p>제23조(특별휴가) ① (생략)</p> <p>②<u>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게는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u></p>	<p>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u>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p> <p>1. <u>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u></p>

하 동 군 공 보

(16) 제 419 호

현 행	개 정(안)
<p>③ ~ ⑥ (생략) <u><신 설 ></u></p>	<p>2. <u>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u> 3. <u>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u></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⑦ <u>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u></p> <p>1. <u>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 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u> 2. <u>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u> 3. <u>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u> 4. <u>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u> 5. <u>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u></p> <p>⑧ <u>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u></p>

현 행	개 정(안)
<p><u><신 설 ></u></p>	<p>⑨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p> <p>⑩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관계법령에 의거 인가된 학습시설)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자녀학교의 초청장,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⑪ 군수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 및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각각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단,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재직휴가는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사용을 금지한다. 2. 부서장은 장기재직휴가 허가하는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휴가 사실 기록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반드시 행정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p>제23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18조, 제23조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다</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2월 29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하동군 조례 제2054호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를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을 ““인터넷 시스템”이란”으로 한다.

제2조제3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홈페이지”란 인터넷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하며, 모바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도 포함한다.

제2조제4호 중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을 ““인터넷 민원”이란”으로 하고, “홈페이지를”을 “하동군 홈페이지”로, 같은 조 제5호 중 ““개인정보”라 함은”을 ““개인정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비밀번호”라 함은”을 ““비밀번호”란”으로 한다.

제2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모바일 홈페이지”란 통상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접속했을 때 모바일 환경에 맞게 디스플레이 해주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8. “모바일 앱”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9. “SNS(Social Network Service)”란 온라인 상으로 사람들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하 동 군 공 보

(19) 제 419 호

제3조제2항제6호 중 “국내·외를”을 “국내·국외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부서는 「하동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며”를 “관리는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4조 중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를 “이용자들의”로 한다.

제5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담당부서에서 입력이 불가능하면 게재자료를 작성하여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 ④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입력하였거나 입력 의뢰된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 조정할 수 있다.
- ⑤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자료 입력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갱신이나 추가입력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중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최대한 빠른 시간내 답변에 응해야 한다.”를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장의 제14조를 제4장의 제14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이용자 참여 행사) ① 군수는 홈페이지 및 SNS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자가 참여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 계획 및 성과 등을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행사, 하동관광, 특산물 등을 홍보·기념하려는 경우
 3.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포상하는 종류·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제목 “전자우편 ID 보급”을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전자우편서비스 제공)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전자우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전자우편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용자는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제3항 중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를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관리하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20) 제 419 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각종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컴퓨터 통신망을 말한다.</p> <p>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p> <p>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p> <p>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p> <p>5.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p> <p>6. “비밀번호”라 함은 컴퓨터이용자의 이용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뜻은 -----.</p> <p>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 ----- -----.</p> <p>2. “인터넷시스템”이란 ----- ----- -----.</p> <p>3. “홈페이지”란 인터넷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하며, 모바일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도 포함한다.</p> <p>4. “인터넷 민원”이란 ----- -----하동군 홈페이지를 -----.</p> <p>5. “개인정보”란 ----- -----.</p> <p>6. “비밀번호”란 ----- -----.</p>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생 략)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 5. (생 략)

6. 국내·외에 군의 홍보

7. (생략)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는 정보화 담당부서로 하고, 홈페이지 분야별 관리부서는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1회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7. “모바일 홈페이지”란 통상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접속했을 때 모바일 환경에 맞게 디스플레이 해주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8. “모바일 앱”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운영체제(OS)에 최적화 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9. “SNS(Social Network Service)”란 온라인상으로 사람들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국내·국외에 -----

7. (현행과 같음)

③ -----

----- 관리는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
----- 이용자들
의 -----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군수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장 전자우편 ID보급

제15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① 군수는 지역 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 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 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③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5장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삭제

제4장 제14조(이용자 참여 행사) ① 군수는 홈페이지 및 SNS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자가 참여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 1. 주요 시책, 계획 및 성과 등을 홍보하려는 경우
- 2. 문화행사, 하동관광, 특산물 등을 홍보·기념하려는 경우
- 3.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
-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포상하는 종류·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제15조(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① 군수는 지역 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전자우편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자우편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자우편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용자는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 홈페이지는 국제협력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관리하며,-----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2월 29일

하 동 군 수 운 상 기

하동군 조례 제2055호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군내 일반택시를 말한다.
2.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제3조(행복택시 운행방법) ① 탑승 대상은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거주 주민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② 행복택시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①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중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군수는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비용의 신청) ①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의 대표자는 주민들이 그 달에 이용한 택시 탑승일지를 근거로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와 행복택시 탑승일지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비용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행복택시 지원내용 변경, 중단 등 사유발생 시에는 마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6) 제 419 호

[별표 1]

행복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탑승자 부담요금
읍·면 소재지까지	100원 / 1대당

- ※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의 주민이 해당 소재지까지 탑승할 경우 버스로의 환승을 고려하여 택시 한 대당 100원의 요금을 부담한다.
- ※ 목적지가 해당 읍·면 소재지를 벗어날 경우 해당 읍·면 소재지부터는 정상 택시요금을 부담하되, 규칙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2월 29일

하 동 군 수 운 상 기

하동군 조례 제2056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등”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등”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하동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하동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보조금
2. 산업용지 구입 및 임대
3.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과장이,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

하 동 군 공 보

(30) 제 419 호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등)</p> <p>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구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해야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군수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군수는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의 재원확보를 위한 <u>하동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u> 운용할 수 있다.</p> <p>③ <u>하동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은</u>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군의 출연금 2. 도 출연금의 상환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p> <p>④ 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용자대상, 용자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9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하동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u> _____.</p> <p>1.~3.(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p> <p><u>제9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u></p> <p>1. <u>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지원 보조금</u> 2. <u>산업용지 구입 및 임대</u> 3. <u>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u>제9조의3(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u></p> <p>② <u>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과장이,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u></p>

하 동 군 공 보

(32) 제 419 호

<p><신설></p>	<p>제9조의4(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2월 29일

하 동 군 수 운 상 기

하동군 조례 제2057호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영 제43조제1항제7호”를 “영 제43조제4항제8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같은 조 제6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을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을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하동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 한다.(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은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하 동 군 공 보

(34) 제 419 호

제28조제6호 중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같은 조 제7호 중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같은 조 제8호 중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같은 조 제9호 중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같은 조 제10호 중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같은 조 제13호 중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같은 조 제19호 중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23호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39조제2항에 “단,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한다.

제6장제2절 “군계획상임기획단”을 “하동군 공동위원회”로 변경 하고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4를 둔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설치 및 기능)

- ① 법 제30조제3항 및 제7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하동군 계획위원회와 하동군 건축위원회로 구성된 하동군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52조제1항제4호 중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법 제52조제1항제5호의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3. 법 제52조제1항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44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구성)

- ① 법 제30조제3항 및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동군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가. 하동군 계획위원회 위원(단,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한다.)
 - 나. 하동군 건축위원회 위원(단, 공동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4.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하동군 계획위원회 또는 하동군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4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4(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등은 「하동군 계획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제3절을 “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하고,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둔다.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3, 별표 19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36) 제 419 호

【별표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6호 관련)

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 별표 3 제14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및 화약류 저장소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제외)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7호 관련)

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4호 가목 내지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8호 관련)

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4호 가목 내지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라목, 바목, 아목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사목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9호 관련)

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4호 가목 내지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목, 마목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마목, 바목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별표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10호 관련)

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목, 마목 및 자목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13호 관련)

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별표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19호 관련)

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군 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 (1) 별표 18 제1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 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 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목, 마목 및 자목

하 동 군 공 보

(42) 제 419 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을 살린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p>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_____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_____
<p>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는 계획관리지역의 규모를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p>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_____ 4. _____
<p>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p> <p>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2.21.조197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 	<p>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p> <p>① ~ ② 삭제</p>

-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토지의 형질변경
 -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①-

_____.

- 1. _____
 - 가. _____
 - 나. _____
- 2. _____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하동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 한다.(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은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하 동 군 공 보

(44) 제 419 호

제28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

제28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11. _____
12. _____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14. _____
15. _____
16. _____
17. _____
18. _____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

-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 23.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
- 24.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별표 24】
- 제3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④ <신설>
- 제39조(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제2절 군계획상임기획단
 제44조의2 <신설>

- 20. _____
- 21. _____
- 22. _____
- 23. <삭제>
- 24. _____
- 제36조(구성) ① - _____
 _____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8조(회의운영)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 ④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 제39조(분과위원회) ② _____

 _____ . 단 위원 구성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2절 하동군 공동위원회
 제44조의2(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0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을 심의 및 지문하기 위하여 하동군계획위원회와 하동군 건축 위원회로 구성된 하동군 공동위원회 (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52조제1항제4호 중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법 제52조제1항제5호의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3. 법 제52조제1항제6호 중 경관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하 동 군 공 보

(46) 제 419 호

제44조의3 < 신 설 >

제44조의4 < 신 설 >

제44조의3(구성) ① 법 제30조제3항 및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하동군 계획위원회 위원(단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한다.)

나. 하동군 건축위원회 위원(단 공동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4.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하동군 계획위원회 또는 하동군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44조의4(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등은 「하동군 계획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군계획상임기획단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2월 29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하동군 조례 제2058호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군이 자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산업회사법인, 어업인단체를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 따른 것을 말한다.
5.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6.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군내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 동 군 공 보

(48) 제 419 호

제5조(소비자의 책무) 군내 소비자는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방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 육성·발전 및 농어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과 고령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시책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 육성
4.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지향하되 농어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시책
5. 농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계승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제7조(지원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시책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를 지원하는 경우

제8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쌀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 지원
2. 농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서 친환경 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3. 쾌적한 농어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사업의 지원
4. 농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의 지원
5. 지역별 특색 있는 작물을 재배하여 농어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관보전 등의 사업
6. 수산자원 회복 또는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8. 그 밖에 협정의 이행에 따라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업종 및 품목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① 군수는 세계 농수산물 교역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안전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실·화훼·특용작물 등의 우량종자, 육묘 및 수산종묘사업
3.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유통·물류비 등의 지원
4. 농수산물의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5. 농수산물의 물류 및 유통 개선사업
6.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7. 농어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 지원
8.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9. 농어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어업기계 보급사업
10.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어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일부 지원
11.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4.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5. 가축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6.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7.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8. 수산인 안전공제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9.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한 농어업의 재해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 군수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개발정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2. 농어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3. 농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
5.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7. 그 밖에 농어촌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하 동 군 공 보

(50) 제 419 호

제12조(농어업인력 육성 및 창업촉진) ① 군수는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 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기술 및 경영교육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어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어업의 선진화·첨단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농어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비를 출연하여 연차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신청) ① 농어업인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사업 결정) 농어업인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하동군 어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 교부) ① 지원결정 사항을 통지받은 농어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정책심의회 설치) ① 법 제15조에 따라 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위원회와 하동군 어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농업·농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
3. 농업인 또는 군수가 신청한 농업분야 사업의 예산심의
4.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6.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 농업·농촌 정책에 관한 자문
7. 어업·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가 소득안정 등 어업·어촌 정책에 관한 자문
9. 그 밖의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③ 정책심의회 기능, 구성 등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를 준용 한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2월 29일

하 동 군 수 운 상 기

하동군 규칙 제1124호

하동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2월 29일

하 동 군 수 운 상 기

하동군 규칙 제1125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금의 용도) 조례 제9조의2제3호의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범위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르는 계약 및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② 그 밖의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54) 제 419 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5조의2(기금의 용도) 조례 제10조제3호의“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범위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p>제5조의3(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르는 계약 및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한다.</p> <p>② 그 밖의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p>